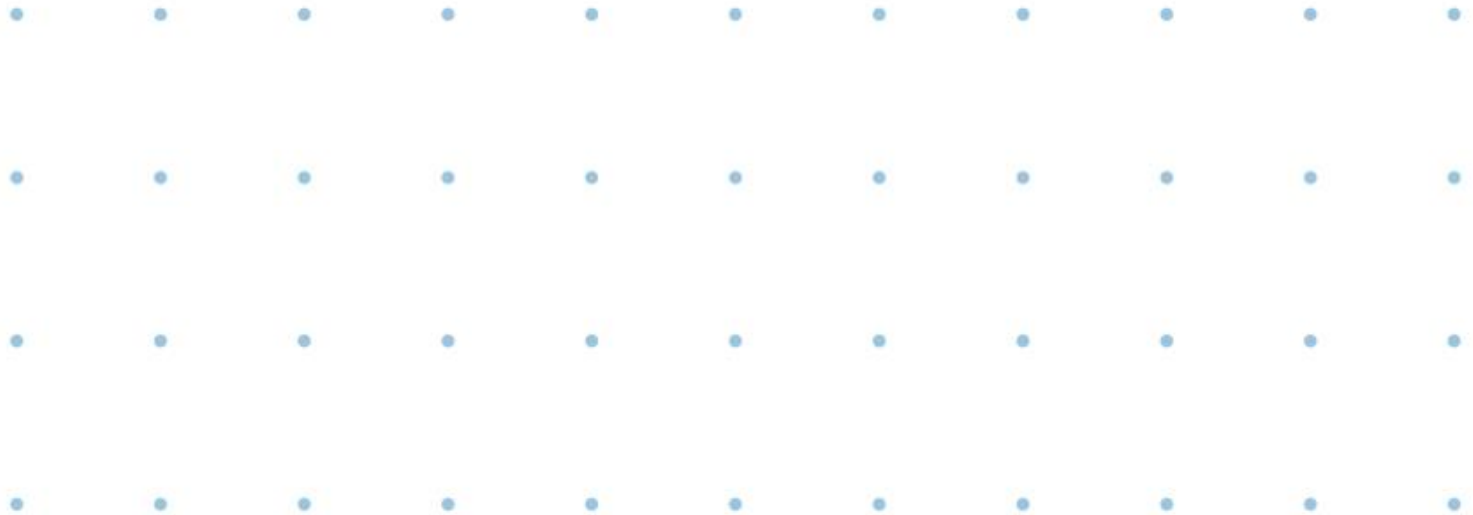




2018년 7월 1일 변경사항

2018년 7월 1일 변경사항

1.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
2. 의원 외래 야간(18시~09시), 토요일, 공휴일가산 신설
3.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

1.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

- **적용일자**
 - 2018년 7월 1일
- **적용대상**
 - 건강보험(차상위 제외) 외래환자
- **적용내용**
 - 개인정신치료(NN001, NN002, NN003, NN004, NN005),
집단정신치료(NN021, NN022, NN023)
해당항목(코드)에 대해 본인부담 인하
의원 : 10%
병원 : 20%
 - 항목코드 변경
항코드 : 07 정신요법료
목코드 : 13 정신치료 외래본인부담 경감항목
 - 산정특례는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적용
단, 의원에서 산정특례 본인부담 20% 인 경우는 정신치료항목 의 10% 본인부담
 - 이전 개인정신치료 코드 (NN011, NN012, NN0130)는 삭제됨

1.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

- 의원본인부담계산방법

- 65세 이하

- 본인부담 : (총액-정신치료항목) * 30% + (정신치료항목 * 10%)

- 65세 이상

- 의약분업 예외지역

-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

- 15,000원 이하 : 1500원

- 25,000원 이하 : 10%

- 30,000원 이하 : (총액-정신치료항목) * 20% + (정신치료항목 * 10%)

-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

- 15,000원 이하 : 1500원

- 20,000원 이하 : 10%

- 25,000원 이하 : (총액-정신치료항목) * 20% + (정신치료항목 * 10%)

-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외

- 15,000원 이하 : 1500원

- 20,000원 이하 : 10%

- 25,000원 이하 : (총액-정신치료항목) * 20% + (정신치료항목 * 10%)

1. 외래 정신치료 본인부담 경감

- **병원급 본인부담계산방법**
 - 동단위병원
본인부담 : (총액-정신치료항목) * 40% + (정신치료항목 * 20%)
 - 면단위병원
본인부담 : (총액-정신치료항목) * 35% + (정신치료항목 * 20%)

2. 의원 외래 야간,토요일,공휴가산 신설

- **변경내용**

- 의원 외래환자가 야간(18~09시), 토요일, 공휴일에
지정된 행위(마취료, 처치및수술료)를 시행시 소정점수의 30%가산
 - >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`8`을 기재
Ex) 00040**8**0
 - > 기존 야간(18~09시), 공휴일가산과 중복하여 가산 할 수 없음
 - > 지정된 마취료, 처치및수술료에 한하여 가산할 수 있음

3.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

- **적용일자**
 - 2018년 7월 1일 진료분 (각 단계 종료일기준으로 적용)
- **변경내용**
 - 65세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
 - 건강보험 : 30%
 - 의료급여1종 , 차상위 1종 : 10%
 - 의료급여2종 , 차상위 2종 : 20%